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8<sup>th</sup> July 2013

- ▶ WHERE IS GRACE CHANG?: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2
- ▶ ABOUT WRITERS  
.....2
- ▶ COVER STORY: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부가가치세법 개정)  
.....3
- ▶ FTA NEWS:  
국제 통상질서 개편에 대비한 선제적 FTA  
체결전략  
.....5
- ▶ VOICES FROM THE FIELDS:  
세관 흥장의 '1878'과 'A'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④8  
.....11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장승희  
대표 관세사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10여 년 전, 관세사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저에게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과 연결시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방점은 ‘노력’과 ‘좋은 결과’에 찍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진실로 내게 가장 좋은 결과일까요?

개업 10주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23개의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이룩한 삶의 터전이 남북 당국 양측의 몇 번의 신경전 후에 사실상 폐쇄가 된 것이지요. 언제 다시 가동이 될 것인지? 가동이 되기는 할 것인지? 작은 공단의 문제는 거대한 북핵문제와 연결이 되며 미국, 중국까지 관련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판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1조가 넘는 피해액이 관련된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과연 노력의 부족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은 것인가요?

이번 달의 Cover story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출입기업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살펴보기 바랍니다. FTA News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선제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Voices from the Fields는 고종황제의 유히를 받은 세관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법령변경소식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과 기타 고시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인사대천명! 영어로는 Man proposes, God disposes 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에게 상응하는 하늘의 뜻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짧은 인간의 시야로는 하늘의 큰 뜻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나 부잣집의 귀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노력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사태인 것처럼, 개성공단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기업들도 자신의 노력과 관련 없이 닥쳐온 일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뜻에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늘의 명을 따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대통령의 방중으로 개성공단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



성기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공항 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담

FTA News–

국제 통상질서 개편에 대  
비한 선제적 FTA 체결전략



신종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컨설팅

Voices From The Fields–

세관 홍장의 ‘1878’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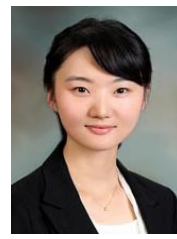
백승찬 관세사  
(sbai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부산 지사장
- 부산세관 행정서기보 공채
- 세무서기 승진(마산세관)
- 세무주사보 승진
- 관세주사 승진(경남사천세관)
- 행정사무관 승진
- 대통령상 표창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보화 관세사  
(bhlj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28기 관세사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RULINGS ㉞

HQ 547018 원단 스크랩  
(Scrap)의 생산지원  
해당여부 등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

법제처는 7일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37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에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개정이 포함되어 수출입 업체의 대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 절차 규정 역시 새롭게 신설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1.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 16조)과 관련하여 “①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수정 신고 하는 경우”, “②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보정·수정 또는 경정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세관장 직권으로 추징(법인심사, 기업조사, 종합심사 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는 FTA와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라 수입통관 후 관세 추징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이번 부가세 개정을 통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 전망 된다.

## 2.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의 신설

관세청은 지난 2월 1일 수출입통관대행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통관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절차를 신설하였다. 통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화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규정에 따르면 기존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통관수수료를 전체 운송비용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게 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바 업체의 주의가 요구 된다.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본 개정은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그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상 이유를 두고 있지만, 추징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함으로써 허위 신고 등 위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 통관적법성 8대 요소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관의 관세 조사 등을 통한 추징이 있기 전에 기존의 불합리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편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포워더가 통합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관련 용역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여 각 용역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통관적법성과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대비하여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능력제고가 필요하다.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력과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가 조화된다면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성 기 창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 국제 통상질서 개편에 대비한 선제적 FTA 체결전략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통상여건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달부터 美-EU FTA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sup>1</sup>, 미국 주도의 TP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신흥국들은 시장개방 목적의 FTA 를 경계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통상협력을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어 기존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제적인 통상교섭을 통한 FTA 체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1. 한-러시아 FTA 추진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5 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교역 확장을 토대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이른바 `신(新)북방정책`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 년 중단된 한-러 FTA 체결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논의는 올 하반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FTA 를 맺으면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등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은 111 억달러, 수입은 114 억달러로 1990 년 수교 첫 해에 비해 수출은 94 배, 수입은 152 배 각각 증가 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한-러시아 FTA 체결을 통한 신규시장 발굴 및 자원 수입경로 다변화 전략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한-중 FTA 등 지역통합 주도 노력

새로운 FTA 를 체결하는 전략과 더불어 이미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와 기 체결된 한-미 FTA 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허브 역할을 우리나라가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FTA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베트남 FTA 및 한-중-일 FTA, RCEP 타결시 우리의 FTA 권역의 무역비중은 35%(2013)에서 69%로 증가가 전망된다.

한편 현재 지역통합 주도를 위하여 협상중인 각 FTA 별 의의를 살펴보면, 한-중 FTA 를 통해 우리나라는 규모기준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다. 한-중-일 FTA 를 통해서 3 국간 기존 경제협력을 강화 및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인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베트남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를 통해서 이들 신흥국들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경제발전에 따른 발전동력을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들 신흥국들의 자원 및 에너지산업 개발에 대한 협력을 통해 win-win 방식의 FTA 를 추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의 역할>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2013.06.14

가까운 미래에는 전세계적인 경제적 주도권이 과거 미국-유럽 중심에서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태평양권역으로 이동되는 중대환 변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이 변화를 주도하고, 한국에 우호적이고 유리한 통상환경을 구축하는 과제에 있어서, 상술한 선제적인 FTA 체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FTA,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전술적인 FTA 의 선제적 체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종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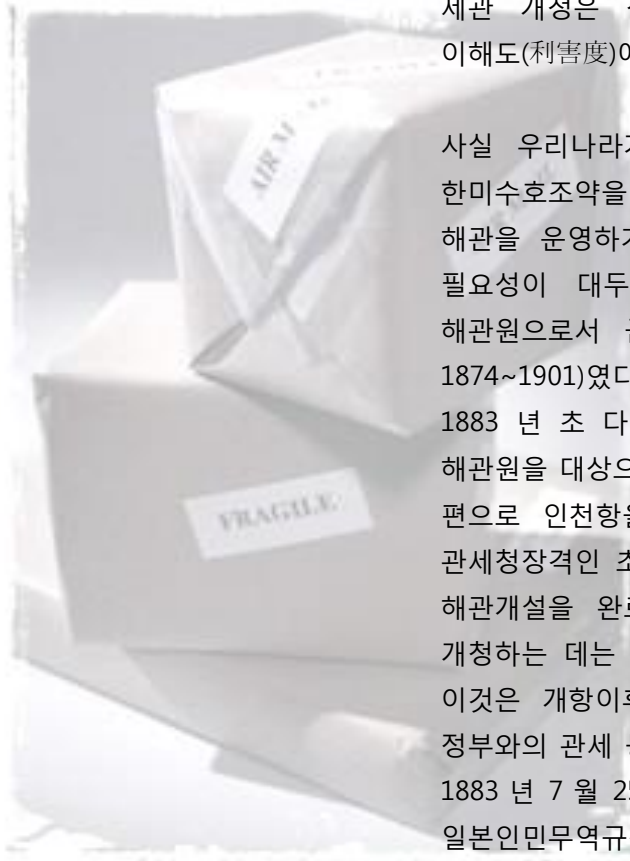
<sup>1</sup> RCE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 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 를 말함

# Voices From The Fields

## 세관 총장의 '1878' 과 'A'

올해로 우리나라에는 세관이 문을 연 지 130년이 되었다. 1883년 같은 해에 먼저 서해안부터 6월 16일에 인천해관이 문을 열고 이어서 동해안에 원산해관이 6월 19일 개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1월 3일에 남해안에 부산해관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3곳에 세관을 가지게 됨으로서 관세자주권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개항은 1876년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순이지만 세관이 문을 연 것은 개항과는 역순으로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은 개항은 일본, 세관 개청은 청국의 영향이 크다보니 그 나라와 가까운 지역부터 이해도(利害度)에 따라 문을 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관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1882년 한미수호조약을 체결이후이다. 그래서 정부는 관세 수세업무를 관장하는 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관업무와 외교에 능한 인재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발탁된 대표격인 고빙인사가 청국에서 해관원으로서 근무하던 독일인 뮐렌돌프(P.G.von Möllendorff, 穆麟德: 1874~1901)였다. 그가 1882년 12월 26일 고빙되어 고종을 알현하고, 1883년 초 다시 청국으로 건너가 청국해관에 근무하고 있던 서양출신 해관원을 대상으로 고빙교섭을 하여 1차로 13명을 청국 증기선 Pechili 호 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을 시키게 된다. 귀국 후 5월에 지금의 관세청장격인 초대 해관총세무사가 된 그는 고종의 지시대로 상반기내에 해관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결과 인천해관과 원산해관이 개청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으나 부산만은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은 개항이후 7년 동안이나 부산항에서 무관세를 누려왔던 일본 정부와의 관세 등 통상에 대한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883년 7월 25일에서야 '한일통상장정'이라고 부르는 "조선국에 있어서 일본인민무역규칙"이 조인이 되고, 조인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0 일이 지난 11 월 3 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서 수출입무역업을 영위하던 일본상인들은 드디어 무관세시대를 종료하고 1883 년 11 월 3 일부터 부산해관에 수출입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바로 이날이 부산세관 개청일이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 월 3 일은 일본 명치천왕의 탄생일이라 당시 부산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전관 거류지역에는 깃발이 나부끼고, 축포가 터지는 등 축하행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걸 멀리서 바라본 몇몇 서양인들은 마치 부산해관의 개설축하행사로 오인할 정도로 성대했다고 한다. 이처럼 11 월 3 일은 일본천왕 생일과 겹치도록 한 개연성이 짙어 보이므로 혹자는 일제식민지사관에서 나온 날짜 라면서 부산해관의 개청일자를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밝힌 7 월 3 일로 바로 잡자는 반론을 펴서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은 미묘한 이해에 따라 문을 연 부산세관이지만 처음에는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인의 가옥을 빌려 개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항에서의 세관이 문을 연 것은 개항이후 부산을 주무대로 무역을 하던 일본인에 대하여 무관세를 종식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개항이후 시작된 무관세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국제 기계면직물인 양포(洋布)가 일본상인에 의해 수입이 되어 우리나라의 삼베·모시와 같은 가내 수공업을 몰락케 하고 여기서 벌인 돈으로 쌀, 콩을 비롯한 곡류와 광석류를 마구잡이로 사서 반출해 갔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갔다. 이러한 정황을 제일 먼저 조정엔 건의한 사람이 경상좌도 암행어사 이만직(李萬植)이었다. 그는 “모든 물품의 거래에는 정세가 있는 법이며, 이제 이러한 입규에 의거 먼저 화물을 뽑아 각 물품에 세액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바로 이 건의는 고종의 윤허를 받아 결국 동래부사 윤치하에게 하달되어 1878 년 9 월 3 일부터 부산항 두모포에 있는 판찰소(辦察所)내에 해관을 설치하여 내국인이 일본상인에게서 구입한 수입상품에 대해

서 15~20%의 징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두모진해관설치는 부산주재 일본상인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은 일본군함이 부산항에 와서 무력시위를 하는가 하면 두모포해관에 들러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그해 11 월 26 일에 정세를 하고 해관을 폐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모진해관은 문을 연지 불과 3 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지금 세관직원의 정복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흉장에는 1878 이란 숫자가 새겨져있다. 마치 호오돈의 주홍글씨 'A'자처럼 상징적으로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넷 숫자는 바로 두모진해관의 설치사건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세관의 효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나라의 신성한 관세자주권을 찾는 하나의 역사적인 몸부림의 징표로서 의미가 더 크다.

이제 우리나라 개항장에는 문을 연지도 1 세기가 넘는 많은 세관이 있다. 그동안 암울한 역사를 순간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이 나라의 재정수입을 위해 일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보니 부산세관의 경우는 137 년의 개항역사를 가진 부산항만에 자리하면서 이 나라의 재정수입을 거둬들이는 큰 머슴 역할을 함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손톱 및 가시 뽑기 등 국가 재정정책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관세사로서 업을 하면서 친정집(세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백 승 찬

[scbaik@customsservice.co.kr](mailto:scbaik@customsservice.c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 개정내용

#### ①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 (안 제 21 조부터 제 24 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②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 (안 제 29 조 제 4 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예정)

#### ③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안 제 35 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 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④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 정비 (안 제 38 조부터 제 44 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 개정이유

기업-정부間 원산지확인서 등 FTA 서류의 전자적 유통확산\*을 위해 FTA 표준 전자문서 3종 서식 제정 필요

(현황) 기업 FTA 시스템 마다 전자문서 서식이 상이하여 기업 間 유통 제약

(효과) 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과 FTA 활용 제고

### 2. 주요 개정내용

#### ①FTA 표준 전자문서 제정

- 전자 「원산지(포괄)확인서」(별지 제 2 호의 3), 「국내제조(포괄)확인서」(별지 제 2 호의 4) 및 「원산지소명서」(별지 제 2 호의 5) 신설 (제 2-3-2 조)

※ 향후 세관의 원산지 조사시 전자문서로 자료 제출 허용

#### ②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서면조사 통지서」, 「조사예정 통지서」,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현지 조사 결과통지서」 「이의제기서」 등 6 종

### 3. 시행시기

2013. 6. 13.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 개정이유

담보제공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 2. 주요 개정내용

①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제공생략 완화 요건 신설 (안 제 5 조제 2 항제 2 호 마목·바목)

○ 담보제공 생략요건 완화를 위하여 선택적 기준\* 추가

\* 최근 2 년간 연 10 억원 이상 수출업체 또는 최근 3 년간 연 10 억원 이상 납세실적 있는 업체

②담보기간 만료에 따른 관세채권 일실 방지 (안 제 30 조제 5 항)

○ 수리전반출 時 제공된 보증기간한정 담보는 보증기간내 납세의무확정을 종료토록 만료 30 일 전까지 반출승인부서에 통보

### 3. 시행시기

2013.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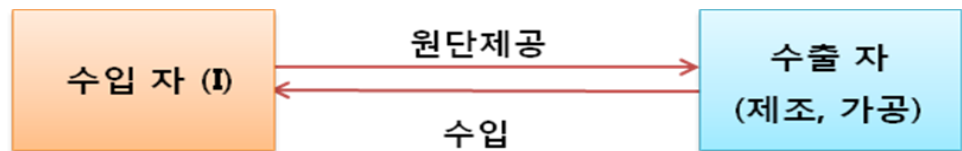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 HQ 547018

# 원단 스크랩(Scrap)의 생산지원 해당여부 등



### □거래사실

1. 수입자 (I)는 중저가의 드레스를 수입함.
2. I 는 아시아의 특수 관계없는 공장들로부터 CMTQ 베이스(on a cut, make, trim, and quota basis)로 의류를 구입하며, I 는 아시아의 특수 관계없는 공장들에게 원단을 생산지원으로 제공함.
3. 수입자의 주장에 의하면, 세관신고 자료는 원단 비용 뿐만 아니라 CMTQ 비용을 포함하며, 그 송장에 반영된 원단 가격은 적절한 거래가격 산출을 위해, I 의 미국 직원이 외국의 송장 발행인에게 제공한 금액을 나타냄.
4. I 는 관행상 손모량에 대한 명세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원단의 예상 사용량에 기초 하여 원단지원 금액을 계산해왔으며, I 가 사용했던 송장상의 원단 가격은 의류의 실제 투입된 원단가격을 상회한다고 주장함.
5. I는 절단 될 패턴 수를 최대화 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컴퓨터 프로세스화된 원단 절단 표식(Marker)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고, 이러한 표식은 회계

기록만큼이나 정확하며 원단의 효율과 관련한 이런 기록들은 미국의 관세부와 목적상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6. 또한 I의 주장에 따르면, 스타일 번호, 색상, 문양 및 원단은 변할지 모르지만, I가 만드는 드레스 스타일이 매년 변하는 것은 아님.

7. 1996년 5월 29일 서신에 따르면, I와 세관 사이에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원단 손모량을 결정하는 평균 효율을 정하기 위한 통계 표본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8. I 는 평균 효율과 원단 손모량을 수치화하기 위해 1996년에 생산된 제품에 기초한 평균효율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1995년 수입분에 1996년 평균효율을 적용해 주도록 요청함.

9. I 는 1996년 시즌 드레스의 대표적인 표본인 20~25개의 스타일 표본을 제시하였으며, 의류에 실제 사용된 원단가격 결정에 사용될 평균 효율로써 71.63%(손모율 28.37%)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0. I 는 평균효율과 문제가 되고 있는 1995 년 분 손모량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9 년 5 월 26 일 추가자료 제출시 첨부자료 A(원단의 평균 손모량 계산을 뒷받침하는 스케줄 및 문서)와 첨부자료 B (1995 년 모든 수입분의 스타일과 CMTQ 베이스 선적물품 스케줄)를 제시함.

11. 첨부자료 A 의 계산결과는 I 가 기록 유지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것이며, 1995 년 CMTQ 기준으로 선적된 859,321 점의 의류 중 100,894 점 의류에 관한 원단 효율을 설명 함. I 에 의하면 이 표본은 1995 년 CMTQ 선적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단 손모량의 대표적인 표본이며, 첨부자료 B 는 1995 년 총 수입 분에 대한 추가 원단 비용 및 21.79% 손모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과도한 과세가격을 나타냄.

12. 세관은 수입물품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원단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원단 효율을 수치화 하는 용도로서 I 의 표식을 용인하지 아니함. 오히려, 세관은 수입의류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원단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컴퓨터로 제작된 표식보다는 회계기록의 중요성을 강조 함.

13. 세관은 I 의 회계기록을 이용한 손모량을 입증하기를 시도했으나, I 가 회계기록상의 원단 손모량을 문서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함. 더욱이 I 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실제 절단 표식도 제시하지 못함.

**□쟁점**

1. 수입자가 만든 원단 표식을 반영한 원단 이용 및 효율성에 기초한 원단 가격이 적절하게 계산된 것인지?
2. 원단 가격이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가능한지?

**□쟁점검토**

**1. 법적 근거**

가.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이다.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적절하게 할당된 생산지원 비용을 포함한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함.

나. ‘생산지원’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며, 제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판매를 위해,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제공한 다음의 것으로서,

- 1)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결합되는 것
- 2) 수입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다. 19 C.F.R 152.103(d)(1)은 생산지원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 19 C.F.R 152.103(e)(1)은 생산지원비용의 비례배분 방법에 대하여 각각 설명 함.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General Notice(1995 12. 20)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생산기간 동안 발생한 스크랩(Scrap)은 그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생산지원 비용을 구성 할 수도 있음.

나. HRLs 545909, 545910, 545911, 545913, 545914 (1995. 11. 30)

객관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증거를 거래 당사자의 회계 및 재정기록 또는 다른 자료로부터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관은 다른 관련자료의 검토를 배제하지 아니함.

다. HRL 546234

한국의 원단상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후 특수관계 없는 홍콩과 중국의 제조자 들에게 해당 원단을 위탁 후 제조가공 한 후 수입한 경우, 관세를 계산함에 있어 컴퓨터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손모량 계산이 손모원단의 합리적인 비용과 가치를 나타낸다고 인정 함.

### 3. 쟁점검토

가. 현 쟁점 물품은 General Notice(1995.12.20)가 채택되기 이전에 수입되었기 때문에, 수입신고 당시 유효했던 견해에 따르면 부서지고, 파편이 되고, 손실되고, 물리적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한 구성 품은 관세법에 따른 ‘생산지원’이 아님. 따라서 그런 물품의 금액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 함.

나. 세관은 컴퓨터 프로세스를 이용한 손모량 결정법은 그 자체로만 보면 합리적인 방안 이라는 데에 동의 함. 그러나 HRL 546234 와는 달리 I 가 제시한 평균효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한 이용 및 효율을 반영하지 아니 함. I 의 의견대로 제품의 스타일과 표식이 매년 바뀌지는 않지만, 색상, 문양과 원단은 바뀔 수도 있음. 이러한 변화는 소모되는 원재료 량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다. 재봉 질 할 때 절단된 여러 원단 조각들 위의 문양들을 매치(Match)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원단 양에 따라 손모량은 다양 함. 같은 표식을 사용하지만, 원단들이 바뀔 때마다 평균 손모량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게다가 I 가 제시한 자료에 기초했을 때 I 는 1995 년에 CMTQ 베이스로 선적된 859,321 점의 의류에 대한 구체적인 원단 효율을 분석할 수가 있었음.

라. 제시된 자료로 보아, 평균효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제품의 원단 이용과 효율을 대표할 수가 없음. 따라서, 평균효율은 1995 년에 CMTQ 베이스로 선적된 859,231 점의 의류 생산에 사용된 원단의 손모량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것 임.

### □결정

1. I 가 제시한 원단 표식을 반영한 원단 이용과 효율에 기초하여 원단 지원 비용이 계산될 수도 있으나, 수입자가 제시한 평균 효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제품의 원단 이용 율과 효율을 대표 하지 아니 함.

2. I 는 손모량 계산에 컴퓨터 프로세스 표식에 의한 손모량을 사용할 수도 있음. 허나, 이는 1995 년 CMTQ 베이스로 선적된 859,321 점 각각의 의류에서 발생한 손모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제시할 수 없다면, 해당 불완전 정보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